



DAEGU TUNINGCAR RACING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일반규정(2019)-

목 차

서 문

정의와 약어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 제 2 조. 대회 목적
- 제 3 조. 주최자
- 제 4 조. 주최자의 권한
- 제 5 조. 준수사항

제 2 장. 대회운영규정(일반)

- 제 1 조. 개최종목
- 제 2 조. 대회일정
- 제 3 조. 클래스
- 제 4 조. 대회 참가비 및 상금
- 제 5 조. 참가신청
- 제 6 조.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
- 제 7 조. 출전대수
- 제 8 조. 보험

제 3 장. 대회운영규정(경기)

- 제 1 조. 경기장
- 제 2 조. 연습주행
- 제 3 조. 본선주행
- 제 4 조. 스타트 절차
-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제 6 조. 경기 종료 및 회차
- 제 7 조. 기록계측
- 제 8 조. 경기의 중단

제 9 조. 경기재개

제 10 조. 경기운영 지원차량

제 11 조. 경기포기(Retire)

제 12 조. 일반 안전 및 차량 고장/사고

제 13 조. 경기 방해 행위

제 14 조. 성적 및 시상

제 15 조. 시상식

제 16 조. 항의

제 17 조. 벌칙

제 4 장. 대회기술규정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제 2 조. 안전규정

제 5 장. 참가선수 준수사항

제 1 조. 선수의 책임 및 의무

제 2 조. 선수의 복장

제 3 조. 메디컬 체크

제 4 조. 드라이버 브리핑

제 5 조. 선수 및 차량 변경

제 6 조. 차량 반출

제 7 조. 질서의 유지

제 6 장. 부 칙

제 1 조. 규정위반

제 2 조. 규정의 효력

제 3 조. 규정의 해석

제 4 조. 규정의 변경

서 문

대구광역시가 주관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최하는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이하 DTR)는 FIA국제스포츠규칙(이하'ISC규칙'),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규칙(이하 'KARA규칙') 각 경기장 일반규칙, 본 대회 규정(부칙포함), 추가규정(홈페이지 공지)을 사용하며, 모든 참가자(ASN, DOC, 드라이버, 오피셜, 팀)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정의와 약어(Definitions & Abbreviations)

- 경기(Competition) : 이벤트 내 진행되는 경기로, 연습주행(일부) 및 본선주행으로 구분
- 공식 프로그램(Official Program) : DOC 가 이벤트 진행을 위해 이벤트 개최 전 참가자에게 알리는 공식문서
- 공식통지(Official Notice) : DOC 혹은 경기위원회 가 경기장에서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
- 테크니컬 델리게이터(Technical Delegate) : DOC 에 의해 지정된 차량 기술 분야의 대표
- 드라이버(Driver) :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엔트리를 부여 받은 자로서 소속 ASN 으로부터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자
- 라이선스(License) :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속 ASN 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
- 이벤트(Event) : 대회 모든 일정을 포함하여 연습주행부터 본선주행까지 모든 일정을 말함
- 연습주행(Practice) : 드라이버 브리핑 이후 드래그레이스 관련 대회 첫 참가자 및 초보 참가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목적의 주행
- 본선주행(Main Race) : 기록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클래스별 주행, 타겟트라이얼 및 베스트랩으로 구분
- 참가자(Participants) : 대회 에 참가하는 사람 혹은 팀 단체를 말함
- 참가차량(Automobile) :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DOC의 규정을 충족하여 확인된 차량
- 트랙(Track): 코스 내 가장자리 백색선 까지를 말함
- 특별규정(Supplementary Regulations)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DOC 가 별도로 발표하는 추가규정을 말함
- 팀크루(Team Crew) : 참가 팀의 멤버들로 피트 내에 상주하며, 차량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
- 파크페미(Parc Fermé) : 예선과 결승 후 참가차량 검사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 피트(Garage) : 참가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지
- ASN : Authority Sporting National 의 약어로 FIA 가 승인한 국내 스포츠 권한 보유자
- ISC 규칙 :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의 약어로 FIA 국제스포츠규칙과 그 부칙

-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한국의 ASN인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약어
- 세이프티카(Safety Car) : 경기 중 트랙주행이 위험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고 경기를 중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트랙에 내보내는 오피셜 차량, 본 대회에서는 경기지원차량의 역할을 겸함
- 경기지원차량(Support Car) : 경기 중 발생하는 유사상황(차량고장, 사고 등)에 대응하여 트랙에 진입, 경기재개를 위한 현장정리 활동을 수행하는 오피셜 차량
- DOC : DTR Organizing Committee , 대회 조직위원회의 약어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 1.1. 국 문: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 1.2. 영 문: Daegu Tuning Car Racing Competition
- 1.3. 약 칭: DTR ※ 대회 주최자는 대회 명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다.

제 2 조. 대회 목적

- 2.1. 본 대회는 드래그 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아마추어 대회로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주최자

- 3.1. 명 칭: (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3.2.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 3.3. 사무국: 053) 670-7800 (Fax - 053) 615-0201)

제 4 조. 주최자의 권한

- 4.1. 주최자는 대회장소, 일정, 클래스, 관련규정 등 대회와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4.2. 주최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DOC의 승인을 통해 대회의 연기, 취소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4.3. 주최자는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선수를 모집하며, 이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4. 주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DOC의 승인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선수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4.4.1. 규정 및 스포츠맨십 위반을 행한 전력이 있는 선수, 참가팀 및 팀원
 - 4.4.2. 대회와 관련하여 비 매너 행위 또는 언행을 하였거나 공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최측, 또는 경기임원에게 항의한 전력이 있는 선수, 참가팀 및 팀원
 - 4.4.3.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주최자가 건강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참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선수 및 팀원
 - 4.4.4. 대회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에 서명이 누락된 선수 및 팀원
 - 4.4.5. 기타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선수, 참가팀 및 팀원
- 4.5. 주최자는 선수 참가신청 마감 후 각 클래스 당 참가선수의 숫자를 고려하여 해당 클래스를 재편성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취소된 레이스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전액 반환한다. 이 때 최소 참가대수는 제7조에 의한다.
- 4.6. 주최자는 선수의 참가비의 반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 4.7. 주최자는 대회 후원사와 직접 접촉하여 대회 후원을 유치하고, 후원사 노출을 위해 모든 참가 차량에 대한 후원사 로고/제품 등의 부착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 4.8. 주최자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보도, 방송, 방영, 출판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제 3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4.9. 주최자는 대회 전반과 관련하여 DOC를 관리 및 보조하며, DOC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4.9.1.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이하 DTR)의 DOC는 주최자가 주최하는 DTR 의 경기운영 및 규정의 제정과 적용, 규칙의 집행을 주목적으로 한다.
 - 4.9.2. DOC의 의무
 - 4.9.2.1. DTR 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관리
 - 4.9.2.2. DTR 운영
 - 4.9.2.3. 심사위원회 및 경기위원회 구성

제 5 조. 준수사항

- 5.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와 경기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본 스포츠운영규정 및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5.2. 이벤트에 참가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기술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참가자는 차량검사의 의무를 가진다.
- 5.3. 팀 참가자의 경우 팀 대표자 감독을 선정해야 하며, 드라이버를 겸할 수 있다
- 5.4. 팀 대표자 감독 는 이벤트 기간 중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드라이버, 팀크루, 초청자 게스트 등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 5.5. 참가자 준수 사항은 본 규정의 제5장 참가선수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 2 장. 대회운영규정(일반)

제 1 조. 개최종목

- 1.1. 400m 드래그 레이스

제 2 조. 대회일정

2.1. 일정

구 분	내 용	일 시	장 소
본 선	400m 드래그 레이스	10월 13일(일) (09:00~17:00)	대구주행시험장 (대구 달성군)

표 1 개최 장소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 3 조. 클래스

- 3.1. 경기방식 및 클래스

3.1.1. DTR에서 실시하는 경기는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 분	경기방식	경기내용	비 고
본 선	타겟트라이얼	400m 직선주로를 목표한 시간 이내에 주파하지 않으면서 목표시간과 가장 가깝게 주파하는 선수가 우승	
	베스트랩	400m 직선주로를 가장 빠르게 주파하는 선수가 우승	

표 2 개최 경기방식 및 내용

3.1.2. 경기방식 별 클래스는 [표 3]과 같다.

경기방식	클래스 구분	클래스 상세	비 고
타겟 트라이얼	13초 클래스	목표시간 13초 타겟트라이얼	KARA 드래그 D 라이선스 이상
	14초 클래스	목표시간 14초 타겟트라이얼	
	15초 클래스	목표시간 15초 타겟트라이얼	
	17초 클래스	목표시간 17초 타겟트라이얼(2019. 10. 변경)	
베스트랩	PRO 클래스	본 규정의 PRO 클래스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전문경기차량 베스트랩	KARA 드래그 C 라이선스 이상
	SUPER 클래스	본 규정의 SUPER 클래스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수입 슈퍼카 베스트랩	
	STREET 클래스	본 규정의 STREET 클래스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국산/수입 일반차량 베스트랩	

표 3 개최 경기방식 및 내용

3.1.3. 각 경기별 참가차량에 대한 기술규정은 본 규정 제 4 장 대회기술규정을 준수한다.

3.2. 참가자격

3.2.1. 타겟트라이얼 및 베스트랩 출전 선수 전체는 제 2 종 보통 이상의 정지, 취소되지 않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3.2.2. 모든 출전선수는 3.1.2에 의거 KARA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3.2.3. 각 클래스 별 참가자격은 [표 4]과 같다.

클래스	참가자격										
타겟트라이얼	상기 참가자격 3.2.1을 만족하는 참가자 전체										
베스트랩	상기 참가자격 3.2.1 및 3.2.2를 만족하며, 국내외 드래그 관련 행사 및 2017년 1월 1일 이후 관련 대회(행사) 참가경력 1회 이상인 자(당해년도 유예, 무 경력자의 경우 연습주행을 통해 DOC가 출전 가능여부를 판단한다.)(2019. 10. 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주 최</th> <th>대회(행사)명</th> </tr> </thead> <tbody> <tr> <td>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대한하트로드협회</td> <td>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코리아 드래그 그랑프리</td> </tr> <tr> <td>(주)온딜카</td> <td>온딜카 드래그 비교 테스트</td> </tr> <tr> <td>(주)온딜카</td> <td>카바타 튜닝 O2O배 드래그 레이싱</td> </tr> <tr> <td>히스토리 채널</td> <td>JUST SPEED</td> </tr> </tbody> </table>	주 최	대회(행사)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대한하트로드협회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코리아 드래그 그랑프리	(주)온딜카	온딜카 드래그 비교 테스트	(주)온딜카	카바타 튜닝 O2O배 드래그 레이싱	히스토리 채널	JUST SPEED
	주 최	대회(행사)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대한하트로드협회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코리아 드래그 그랑프리									
	(주)온딜카	온딜카 드래그 비교 테스트									
	(주)온딜카	카바타 튜닝 O2O배 드래그 레이싱									
히스토리 채널	JUST SPEED										

표 4 클래스 별 참가자격

- 3.3. DOC는 상기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미 자격자의 출전이 확인될 경우 기존 수상에 대한 권리 박탈 및 향후 경기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 3.4. DOC는 본 규정 제1장 제4조 4.4.5에 의거 선수의 법률위반, 미풍양속저해, 상호신뢰 훼손, 비방, 허위정보 유포, 마약류 투여, 대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대회운영방해 등의 행위로 대회의 권위와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참가를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제 4 조. 대회 참가비 및 상금

- 4.1. 각 클래스별 참가비는 [표 5]와 같다.

클래스	참가비(VAT 포함)
타겟트라이얼	100,000원
베스트랩	300,000원

표 5 클래스별 대회 참가비

- 4.2. 대회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참가비 환불 기준은 본 규정 2장 제 8 조 8.5 항에 의거한다.
- 4.3. 대회 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 4.3.1. 상금 획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 당사자가 부담한다.
 - 4.3.2. 클래스별 상금 지급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4.3.2.1.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클래스	등수별 상금		
	1위	2위	3위
13초~15초 클래스	300,000원 상당의 상품	200,000원 상당의 상품	100,000원 상당의 상품

표 6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등수별 상금 지급액

4.3.2.2. 베스트랩 클래스

구 분	등수별 상금		
	1위	2위	3위
A형	5,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B형	3,000,000원	600,000원	300,000원

표 7 베스트랩 클래스 등수별 상금 지급액

- 4.3.2.2.1 상금은 7.1.1에 의거 참가 대수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변동될 수 있다.
- 4.3.2.3. 참가 대수 5대 미만의 클래스는 경기를 취소한다.
- 4.3.3. 상금 지급
 - 4.3.3.1. 대회종료 후 2주 이내 지급
 - 4.3.3.2. 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는 수상자 본인부담

제 5 조. 참가신청

- 5.1.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5.1.1. 접수는 www.daegutuningcar.or.kr 에서 실시한다.
 - 5.1.2. 시스템상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통한 선수모집 불가 시 이메일 접수로 전환한다.
- 5.2. 참가 신청 및 접수기간, 참가비 납부 방법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참가신청 완료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참가비 입금 확인 시점으로 한다.
- 5.3. 참가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참가비를 입금할 경우 10%의 지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참가 접수기간 공식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 5.4. 참가 신청 취소는 참가 접수기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기간 경과 시 납부한 대회 참가비는 취소시기에 따라 [표 8]과 같은 비율로 환불된다.

구 분	접수마감 전 까지	접수마감 ~ 대회 30일 전	대회 30일 전 ~ 대회 14일 전	대회 14일 전 ~ 대회당일
환불 비율	100%	80%	50%	환불 불가

표 8 대회 참가 취소 시 참가비 환불기준

제 6 조.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

- 6.1. 참가자의 엔트리(Entry)번호는 클래스별 접수순으로 부여한다.
- 6.2. 모든 경기 차량은 주최자가 제공한 엔트리번호를 차량검사, 연습주행 및 기록계측주행 시 정해진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6.3.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Livery Kit)은 주최자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일괄 제공하며, 선수는 차량 검차 시 까지 이를 부여받아 부착해야 한다.
- 6.4. 리버리킷 부착 위치와 디자인, 규격은 별도 공지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기차량은 출전이 제한될 수 있다.
- 6.5. 주최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스티커에 대해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6.5.1.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및 스티커
 - 6.5.2. 정치, 종교에 관련된 광고 및 스티커
 - 6.5.3. 기타 주최자가 인정하지 않는 광고 및 스티커
- 6.6. 주최자는 주최자가 정한 위치(차량 및 선수 복장)에 후원사와 관련된 스티커를 부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선수는 이를 거부할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6.7. 주최자에서 정한 광고물은 다른 부착물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되며, 주최자가 제공한 리버리킷 이외의 자체 차량 광고물은 엔트리번호 및 기타 리버리킷을 판독하기 어려운 색상이나 디자인, 위치여서는 안 된다.
- 6.8. 차량검차 중 경기위원장 또는 기술위원장에 의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광고물은 철거, 수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르지 않는 차량은 출전이 거부될 수 있다.
- 6.9. 주최자의 광고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는 경기차량 및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출전 거부 및 패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7 조. 출전대수

7.1.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레이스 출전 대수는 사전등록된 선수 및 차량에 한해 최대 130대로 제한한다.

7.1.1. 각 클래스별 참가모집대수는 [표 9]와 같다.

클래스		참가대수	비 고
베스트랩	PRO	15대 (최소 11대)	최소 참가대수 미달 시 상금변동 (A형→B형)
	SUPER	15대 (최소 11대)	
	STREET	25대 (최소 20대)	
타겟 트라이얼	13초	25대	상품 변동 없음
	14초	25대	
	15초	25대	
	17초	25대(2019. 10. 변경)	
총 계		130대	

표 9 클래스별 참가모집대수

7.1.2. 참가차량이 5대 이하인 클래스는 경기를 취소하며, 해당 클래스 신청자는 클래스 변경 또는 참가비 전액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7.2. 클래스 별 최대 참가대수를 초과한 이후 참가 신청자에게는 참가비 입금이 확인된 순서로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단, 대회 사정상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선수에 대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참가비는 전액 환불된다.

7.3. 참가대수가 미달된 클래스가 발생할 경우 미달된 수만큼 타 클래스의 참가대수를 늘려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선수에게 경기 출전 기회를 제공한다.

7.3.1. 베스트랩 클래스의 경우 PRO→SUPER→STREET→PRO 순으로, 타겟트라이얼 클래스의 경우 13초→14초→15초→17초→13초 순(2019. 10. 변경)으로 참가선수 미달에 따른 대기 선수 출전권을 부여한다.

예시 1) PRO 클래스 미달, 나머지 클래스 초과 참가신청 시

클래스		참가 신청대수	출전 가능대수	비 고
베스트랩	PRO	10대(5대 미달)	10대(-5대)	미달
	SUPER	17대(2대 초과)	17대(+2대)	초과분 1순위 충족
	STREET	30대(5대 초과)	28대(+3대)	초과분 2순위 충족

예시 2) 13초, 15초 클래스 미달, 14초 클래스 초과 참가신청 시

클래스		참가 신청대수	출전 가능대수	비 고
타겟 트라이얼	13초	20대(5대 미달)	20대(-5대)	미달
	14초	40대(15대 초과)	32대(+7대)	초과분 충족
	15초	23대(2대 미달)	23대(-2대)	미달
	17초	25대	25대(+0대)	해당없음

7.3.2. 베스트랩 클래스 또는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전체 참가선수 총 합에 미달이 발생할 경우 대기선수 출전권은 베스트랩→타겟트라이얼(또는 타겟트라이얼→베스트랩)로 이관된다.

예시 3) 베스트랩 클래스 전체 미달 시

클래스		참가 신청대수	출전 가능대수	비 고
베스트랩	PRO	10대(5대 미달)	10대(-5대)	미달
	SUPER	12대(3대 미달)	12대(-3대)	미달
	STREET	27대(2대 초과)	27대(+2대)	초과분 1순위 충족
타겟 트라이얼	13초	28대(3대 초과)	28대(+3대)	초과분 2순위 충족
	14초	32대(7대 초과)	28대(+3대)	초과분 3순위 충족
	15초	27대(2대 초과)	25대(+0대)	해당없음
	17초	25대	25대(+0대)	해당없음

7.3.3. 모든 클래스의 참가선수가 미달되어 전체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DOC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선수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7.4. 대회 출전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

7.5.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 참가가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 참가자의 경우 본 규정 제2장 제3조 3.2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때, 참가비용은 본 규정 제2장 제4조를 따르도록 한다.

제 8 조. 보험

8.1. 주최자는 대회 및 경기관계자와 참가선수, 관련 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보험(주최자배상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회 외적인 부분(행사장)은 주최자가 별도 선정한 행사운영대행사가 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제 3 장. 대회운영규정(경기)

제 1 조. 경기장

- 경기는 대구주행시험장 고속주회로 직선구간(1.2km)에서 진행한다.
- 경기는 출발점으로부터 400m 지점까지의 가속구간에서 이루어지며, 가속구간이 끝난 이후 모든 경기차량은 결승선으로부터 400m 구간까지 시속 80km/h로 제동한 뒤 정속주행을 통해 패독 또는 출발 대기장소로 복귀한다.
- 상기 명시 된 경기장에서 각 클래스별 주행횟수는 [표 10]과 같다.

구 분	타겟트라이얼	베스트랩
주행횟수	최대 3회(기록계측 3회)	

표 10 클래스별 주행횟수

제 2 조. 연습주행

2.1. 대회당일 드라이버 브리핑에 의무 참가해야하며, 드라이버 브리핑 이후 경기 시작 전 까지

드래그레이스 관련 대회 무경험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습주행을 실시한다.

- 2.2. 연습주행의 기록은 비공인 기록으로써 선수의 기록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계측주행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연습주행 기록에 대한 계측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의해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2.3. 경기위원장은 경기 참가 선수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습주행을 중단할 수 있다.
- 2.4. 연습주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차량고장 등으로 더 이상의 연습주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습주행은 일시중지 될 수 있으며, 해당 문제로 인한 노면오염 및 파손에 의해 기록계측주행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체 경기를 중단 및 종료할 수 있다.

제 3 조. 본선주행

- 3.1. 연습주행 종료 후 클래스에 따른 최종 참가자 명단이 공표된다.
- 3.2. 참가차량이 본선주행에 출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선주행세션 시작 30 분 전까지 대회 사무국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3.3. 클래스별 참가대수에 따라 동시주행 대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클래스별 참가대수	동시주행 대수	비고
10대 미만	1대	
10대 이상	2대	

표 11 참가대수 별 동시주행 대수

- 3.4. 본선주행 중 차량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노면오염 및 파손에 의해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위원장은 해당 주행차선에 대해 주행 일시중지, 또는 전체경기를 중지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체 경기를 중단 및 종료할 수 있다.

제 4 조. 스타트 절차

- 4.1. 모든 클래스는 스타트 아치 아래 출발점에서 스탠딩 스타트(Standing Start)한다.
- 4.2. 각 주행시기(연습 및 본선)가 시작되기 15분 전부터 패독 차량 출입구부터 출발선에서 400m 지점까지의 가속구간과 결승선으로부터 400m 지점까지의 감속구간, 감속구간 이후 패독 차량 출입구까지의 구간에 대해 경기운영 오피셜 외 모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 4.3. 참가차량은 경기운영 오피셜의 안내에 따라 자력으로 주행차선(Drive Lane)에 입차(Corse in) 한 뒤 출발선에 정차(Pre-Staging)한다.
- 4.4. 차량은 출발신호 담당자의 수신호에 따라 신호 트리(Tree)의 두개의 대기 신호(Staging Indicator)가 모두 점등되는 지점까지 서행 이동 후 출발준비(Staging) 한다.
- 4.5. 출발준비 이후 출발신호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녹색 출발신호 점등 전 움직일 경우 플라잉 스타트(Flying Start)로 간주되어 해당 주행 차수는 실격처리 된다.
- 4.6. 주행차량이 모두 출발준비 된 상태에서, 출발신호 담당자의 조작에 따라 신호 트리 좌우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2쌍의 황색 신호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 점등되며, 점등 간격은 0.4~0.5초 이다.

- 4.7. 신호 트리의 최 하단 황색 신호가 점등 된 후 0.4~0.5초 이후에 녹색 출발신호가 점등되며, 대기중인 차량은 녹색 출발신호 점등과 함께 출발한다. 이 때 출발선의 기록표시계에는 각 주행차로 차량의 RT(Reaction Time)가 표시된다.
- 4.8. 녹색 출발신호가 점등되기 이전에 출발한 차량은 4.5에 의거 실격처리 되며, 실격 처리된 주행차선의 신호 트리에는 적색 실격신호가 점등된다.
- 4.9. 동시 주행 차량 대수는 본 규정 제3장 제3조 3.3에 의거한다.
- 4.10. 출발점에서의 입차는 각 클래스별로 엔트리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클래스 간 3분의 입차 준비시간을 가진다.
- 4.11. 주행을 위한 참가번호 호명 이후 1분 이내에 자력으로 출발선으로 입차하지 못한 차량 및 선수의 해당 주행 차수는 실격처리 된다.
- 4.12. 참가차량은 패독 차량 출입구로 진출한 뒤 출발선 정차(Pre-Staging) 전 대기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4.12.1. 번아웃 등 노면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 4.12.2. 흡연 및 쓰레기 투기 행위
 - 4.12.3. 지나친 제자리 공회전(Rev-up), 경적작동 등 소음유발을 통해 경기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 4.12.4. 경기운영 오피셜의 허가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4.12.5. 경기운영 오피셜의 허가 없이 대기장소에 팀원이 출입하는 행위
 - 4.12.6. 경기운영 오피셜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4.13. 4.12를 위반한 참가차량 및 선수는 2번의 경고 이후, 3회 적발 시 적발이후 모든 주행 차수를 실격처리 하며,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 4.14. 4.13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참가차량 및 선수는 시상권을 박탈한다.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5.1. 패독 및 피트 내에서 차량은 30km/h 이하로 주행한다.
- 5.2. 모든 차량은 오전 차량 검사 이후 패독 내 정해진 공간에 클래스별로 대기하여야 한다.
- 5.3. 차량 중 주행이 불가능 하거나 차량 고장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정비하여야 할 경우 경기기술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피트로 이동하여 정비 및 수리할 수 있다.
- 5.4. 피트로 이동하여 정비 및 수리하는 차량은 경기기술위원장에게 허가받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을 임의로 정비 및 수리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될 경우 대회 실격처리 한다.
- 5.5. 패독에서 경기장으로 입차(Course In)는 경기운영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방향지시등을 통해 신호를 한 후 각 클래스별로 이동하도록 한다.

- 5.6. 해당 주행 차수의 주행을 종료한 차량은 경기장에서 패독으로 출차(Course Out)하며, 입차 시 경기운영 오피셜의 지시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통해 신호를 한 후 30km/h 이하로 서행 하도록 한다.
- 5.7. 모든 주행 차수가 종료된 차량은 경기운영관계자의 지시를 따라 자력으로 패독 내 파크퍼미 (Parc Ferme) 로 이동하여 최종 검차를 대기하도록 한다.

제 6 조. 경기 종료 및 회차

- 6.1. 주행 차수별 각 경기는 출발준비 상태인 1~2대의 경주차량 모두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종료된다.
- 6.2. 경기 종료 시 출발선의 기록표시계에 각 주행차선 별 ET(Elapse Time)가 표시된다.
- 6.3. 결승선을 통과한 경주차량은 결승선으로부터 약 400m 구간 동안 차량의 속력을 80km/h으로 감속하고 회차로를 따라 출발 대기장소 또는 패독으로 진출(Course Out) 한다.
- 6.4. 회차 구간에서의 과속, 급제동, 급가속 및 번아웃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1회 적발 시 기록 0.5초 가산, 2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주행차수를 실격처리 한다.

제 7 조. 기록계측

- 7.1. 주행 차수 각 경기의 기록은 차량별 RT 기록과 ET 기록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 7.2. 실격 처리된 차량의 경기 기록은 기록하지 않는다.
- 7.3. 각 클래스의 주행 차수가 종료된 뒤 해당 클래스 참가 차량의 경기기록은 경기 기록위원장 및 경기위원장, 심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경기 사무국의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다.
- 7.4. 경기 기록에 대한 항의는 본 규정집 제3장 제16조에 따른다.

제 8 조. 경기의 중단

- 8.1. 본 규정 제3장 제2조 2.7 및 제3조 3.4에 의거 차량 고장 및 사고 등에 의해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경기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경기는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8.2. 경기가 중단될 경우 경기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즉각 선수에게 알려야 하며, 긴급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중단 안내 이후 20분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최종판단으로 경기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 8.3. 모든 차량들은 중단 안내 및 경기운영관계자의 유도에 따라 30km/h로 서행하여 패독으로 복귀하도록 한다.
- 8.4. 경기 중단 후의 조치
 - 8.4.1. 경기 중단 안내 후 해당 주행 차수에 주행을 완료한 차량은 경기운영 오피셜의 유도에 따라 패독으로 복귀한다.
 - 8.4.2. 기존 패독 대기차량 외 경기 중단 안내 이후 패독으로 복귀한 차량은 경기 재개 시 우선 진출을 고려하여 패독 출구 근처에 차량을 정렬하여 대기한다.
 - 8.4.3. 패독으로 복귀한 선수들은 경기 재개 또는 경기 중단 및 종료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경기 재개 시 재개 안내 5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부근에 위치하도록 한다.

8.5. 8.1 및 8.2에 의거 전체 경기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전 클래스의 해당 기록 계속주행 차수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8.5.1. 순위산정에 따른 시상은 전체 참가차량이 2차시기 주행을 완료 하였을 때 실시한다.

8.5.2. 시상 여부에 따른 참가비 환불 기준은 [표 12]와 같다.

시상 여부	참가비 환불비율	비고
시상 진행	환불 불가	
시상 미 진행	80%	

표 12 참가비 환불 기준

제 9 조. 경기재개

9.1. 8.2에 의거 경기가 중단된 이후 경기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9.2. 경기 재개 시 해당 내용은 경기운영 오피셜을 통해 선수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9.3. 경기 재개 이후 경기 중단 직전 주행 차수에 주행을 완료한 클래스의 선수 및 차량은 경기운영 오피셜의 유도에 따라 출발선 정차 전 대기장소로 이동한다.

9.4. 8.4.3 및 9.3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기 재개 안내 5분 이내에 경기에 복귀하지 못한 선수는 해당 주행차수를 실격처리 한다.

9.5. 경기재개 이후 대회 스케줄 관계상 일부 클래스의 주행 차수를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이 때 기록게시판에 공지와 함께 안내방송으로 관련내용을 전달한다.

9.6. 경기재개 결정은 경기장 환경이 대회 참가자 및 차량에 어떠한 위험도 끼치지 않음을 모두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제 10 조. 경기운영 지원차량

10.1. 경기운영 지원차량(이하 지원차량)은 세이프티 카(Safety Car)의 역할을 겸하며, 경기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장 내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기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경기 일시중지 및 위험요소 확인 및 빠른 고장/사고 처리를 위해 운영된다. 이 때 차량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면의 오염 및 장애물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1.1. 지원차량은 차량 오일류에 의한 노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조토 또는 유사한 기능의 오일흡착제, 블로워, 빗자루 등을 상시 구비한다.

10.1.2. 지원차량은 차량 사고로 인한 파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빗자루, 블로워 및 관련 청소용구를 상시 구비한다.

10.1.3. 지원차량은 차량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화재의 빠른 초기진압을 위하여 3.3kg 이상의 분말 또는 폼형 소화약제로 구성된 소화용품을 2기 이상 상시 구비한다.

10.2. 지원차량은 출발선 부근 또는 도착점 부근 경기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경기위원장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인원은 차량에 상시 탑승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기포기 (Retire)

- 11.1.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해당 주행 차수 이후의 주행 차수에서 자력주행이 불가능하다고 경기기술위원장 또는 관계자가 판단할 경우 경기포기로 간주한다.
- 11.2.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남은 경기를 포기할 경우 해당 선수는 이를 대회사무국에게 보고해야 한다.
- 11.3. 경기포기 보고는 관련양식에 해당 선수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진행된다.
- 11.4. 차량 사고로 인하여 11.3과 같이 해당 선수가 직접 경기포기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수 팀원의 대리보고 및 경기위원장의 판단으로 경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접수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일반 안전 및 차량 고장/사고

- 12.1. 연습 주행과 기록계측주행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클래스 별 규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12.2. 경기운영 오피셜의 안내 또는 지시가 없는 한 코스, 회차로 및 피트 출입로의 역주행은 금지된다.
- 12.3. 주행 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및 응급요원 투입 전까지 선수는 절대로 차량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단, 차량 화재나 폭발 등이 우려될 경우 상대 주행차량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뒤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 12.4. 모든 참가 선수는 주행 중 상대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한 직후 30km/h 까지 속도를 감속하여 차량 고장 또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단, 상대 차량의 화재나 폭발 등이 우려될 경우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정차 및 구난행위는 허용한다.
- 12.5. 참가선수는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 구난차, 지원차량 등의 서비스 차량이 코스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12.6. 차량 사고 당사자(선수)는 경기위원장의 허가 없이 절대 경기장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회 의료팀의 안내 및 지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 12.7. 경미한 고장 및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 차량의 자력주행 및 선수의 주행이 가능할 경우 경기위원장/대회 의료팀의 허가를 받은 뒤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제 13 조. 경기 방해 행위

- 13.1. 연습 및 기록계측 주행 중 고의로 주행차선 경계를 넘거나 경적, 전조등 등으로 상대 선수의 경기진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 실격처리 되며,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 13.2. 경기운영 방해를 위해 차량으로 주행차선을 막는 행위나 주행차로에 선수 및 관계자가

난입하는 행위는 법적 절차에 의거 업무방해 등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 될 수 있으며,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해당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

13.3.기타 경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절차에 의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13.4.위반판정에 대한 항의는 성립되지 않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제 14 조. 성적 및 시상

14.1.성적은 기록계측 주행 중 가장 좋은 400m 주파기록으로 결정한다.

14.1.1.타겟트라이얼 클래스 성적은 제2장 제3조 3.1.1.의 타겟트라이얼 경기방식에 의거 전체 기록계측 주행 차수의 기록으로 결정한다.

14.1.2.베스트랩 클래스 성적은 제2장 제3조 3.1.1.의 베스트랩 경기방식에 의거 전체 기록계측 주행 차수의 기록으로 결정한다.

14.1.3.최종 주행기록은 1/1000까지 기록된다.

14.1.4.기록계측주행 차수가 모두 종료된 후 최종검차 중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의 최종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인정되지 않는다.

14.1.5.최종 순위는 14.1.1. 및 14.1.2.에 의거 결정되며, 동일 성적을 보유한 참가선수 간의 순위는 각 선수별 2번째로 좋은 400m 주파기록으로 결정한다. 단, 2번째로 좋은 기록 또한 동일할 경우 3번째로 좋은 400m 주파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해당 방법으로도 순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차량검차결과, 선수별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위원장 및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14.2.시상은 각 클래스별로 3위까지 진행되며 각 클래스별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14.3.대회 최종 순위 및 성적은 대회종료 후 대회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각 클래스의 최종 순위 및 성적은 KARA의 공인기록으로 인정된다.

14.4.각 클래스의 1위 선수는 아래의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14.4.1. '201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타겟트라이얼/베스트랩 클래스 챔피언

14.5.각 클래스별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및 상품은 본 규정 제2장 제4조 4.3.2.에 의거하여 수여되며, 참가자 수에 따라 경기조직위원회의 합의 하에 상금 및 상품의 규모가 조절될 수 있다.

제 15 조. 시상식

15.1.각 클래스별 3위까지의 입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본 규정 제4장 제2조 2.2에 의거 드라이버 수트를 착용해야 하는 클래스의 선수는 드라이버 수트를 착용한 뒤 시상식에 참석해야 한다.

15.2.15.1을 준수하지 않는 입상자 또는 부득이한 사정없이 시상식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지연시키는 선수에 대한 수상 권리는 박탈되며, 해당 클래스의 수상권은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의

선수에게 이관된다. 이때,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6 조. 항의

- 16.1.참가선수는 검차, 기록, 규정위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항의서를 항의수수료 30만원과 함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사무국에 제출하여 항의사항을 접수한다. 단, 본 규정 중 항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항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16.2.각 항의 내용은 대회사무국의 사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며, 심사위원회 는 항의 내용에 대한 회의 진행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16.2.1.검차 및 관련 결정에 대한 항의는 잠정결정 발표 후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 16.2.2.경기의 최종 결과에 관한 항의는 해당 차수의 주행기록 또는 잠정 결과 발표 후 30 분 이내에 해야 한다.
 - 16.2.3.지속적인 항의를 통해 경기 전반의 지연 및 진행방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 실격처리 및 추후 참가에 대한 재제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6.2.4.항의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 등에 의해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사항의 경우, 통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 16.3.항의수수료는 항의가 인정될 시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반환되지 않고 대회 사무국에 귀속된다.
- 16.4.항의자 혹은 피항의자가 항의 심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공개할 경우 재제의 대상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칙에 처한다.

제 17 조. 벌칙

- 17.1.본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규칙 위반 시의 벌칙은 경기위원장에 의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위반자에게 통보한다.
- 17.2.벌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7.2.1.구두경고(훈계)
 - 17.2.2.기록패널티
 - 17.2.3.실격
- 17.3.대회 당일 동일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 해당 경기에서 가중 처벌을 받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대회 참가에 대한 재제조치가 있을 수 있다.
- 17.4.본 규정 제3장 제13조에 의한 경기방해행위는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을 적용 한다.
 - 17.4.1.1회 위반 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두경고 조치하며, 의도적인 경기방해행위에 의해 경기중단, 상대선수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회 실격처리 한다.
 - 17.4.2.2회 위반 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회 실격처리 하며, 향후 대회 참가에 대한 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 4 장. 대회기술규정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1.1. 타겟트라이얼

1.1.1. 13초, 14초, 15초, 17초 클래스(2019. 10. 변경)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 (2019. 09. 변경) ※ 단, 오토바이는 출전 불가하며, RV/승합/트럭 등은 대회사무국 검토 - 도로교통법에 의거 튜닝 및 부품에 대한 구조변경 필수 - 시트에 대한 탈거는 허용되나 내장재 및 에어백 탈거 불허 ※ 롤케이지, 보강재 장착 등에 의한 내장재 탈거는 허용 -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 ※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 ※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 - 트레드웨어 200 이상의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 ※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전 제한 -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 ※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함 - 조수석 하단에 분말 또는 폼 타입의 소화장비(3kg 이상) 구비(당해년도 유예) ※ 차량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주행 중 움직이지 않아야 함 	<p>검차(경기전, 경기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 또는 실격처리 함</p>

표 13 13초, 14초, 15초, 17초 클래스 차량기술규정(2019. 10. 변경)

1.2. 베스트랩

1.2.1. PRO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된 5인승 이하의 국산/수입 경기전문차량 ※ RV, 승합, 트럭, 오토바이 등은 출전하지 못한다. ※ 국내외 양산 및 시판되었던 차량에 한하며, 자작차는 불허 - 6점 식 이상의 롤케이지 장착 필수, 최소 공차중량 850kg 이상 ※ 단, FIA 및 KARA에서 규정하는 롤케이지 규격을 준수 - 노면 파손위험이 없는 윌리바에 한해서 장착 허용 -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 ※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 ※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 - 드래그 전용 슬릭 등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 ※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전 제한 - 제동을 위한 낙하산 등 보조제동장치의 사용을 허용함 	<p>검차(경기전, 경기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 또는 실격처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 ※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함 - 경기관계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측방배기 사용을 금함 - 조수석 하단 등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분말 또는 폼 타입의 소화장비(3kg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을 설치 - 비상 시 시동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장착 - 차량 전방 및 후방에 견인고리 장착 및 위치표시 스티커 부착 	
---	--

표 14 PRO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2. SUPER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등록된 5인승 이하의 국산/수입 차량 ※ 제조사 순정기준 500마력 이상 (2019. 09. 변경) - 도로교통법에 의거 튜닝 및 부품에 대한 구조변경 필수 - 시트에 대한 탈거는 허용되나 내장재 및 에어백 탈거 불허 ※ 롤케이지, 보강재 장착 등에 의한 내장재 탈거는 허용 - 노면 파손위험이 없는 윌리바에 한해서 장착 허용 -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 ※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 ※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 - 드래그 전용 슬릭 등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 ※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전 제한 - 제동을 위한 낙하산 등 보조제동장치의 사용을 허용함 (2019. 09. 삭제) -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 ※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함 - 조수석 하단 등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분말 또는 폼 타입의 소화장비(3kg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을 설치(당해년도 유예) 	<p>검차(경기전, 경기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 또는 실격처리 함</p>

표 15 SUPER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3. STREET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등록된 5인승 이하의 국산/수입 차량 ※ 제조사 순정기준 500마력 이하 (2019. 09. 변경) - 도로교통법에 의거 튜닝 및 부품에 대한 구조변경 필수 - 시트에 대한 탈거는 허용되나 내장재 및 에어백 탈거 불허 ※ 롤케이지, 보강재 장착 등에 의한 내장재 탈거는 허용 - 노면 파손위험이 없는 윌리바에 한해서 장착 허용 -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 	<p>검차(경기전, 경기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 또는 실격처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 ※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 - 드래그 전용 슬릭 등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 ※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전 제한 - 제동을 위한 낙하산 등 보조제동장치의 사용을 허용함 (2019. 09. 삭제) -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 ※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함 - 조수석 하단 등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분말 또는 폼 타입의 소화장비(3kg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을 설치(당해년도 유예) 	
--	--

표 16 STREET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제 2 조. 안전규정

2.1. 모든 출전차량은 제1조에 의거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당해년도 유예)

2.2. 베스트랩 클래스는 클래스별로 차량 안전 장비를 반드시 장착한다.

2.2.1. PRO 클래스

안전장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식 버킷시트 - 6점 식 이상의 하네스 - 안전 연료탱크 - 창문 레이싱 네트 - 롤케이지 보호 패딩 -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 	FIA 공인제품

표 17 PRO 클래스 필수 안전장비 목록

2.2.2. SUPER 클래스 및 STREET 클래스

안전장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식 버킷시트(당해년도 유예) - 6점 식 이상의 하네스(당해년도 유예, 4점식 이상 하네스로 대체) - 창문 레이싱 네트(당해년도 유예) -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 -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당해년도 유예) ※ 당해년도는 경기장 가속구간 내 100m 간격으로 설치된 대형 소화기로 대체함(2019. 10. 변경) 	

표 18 SUPER 클래스 및 STREET 클래스 필수 안전장비 목록

2.2.3. PRO 클래스는 2.2.1.에 의거 차량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SUPER 클래스 및 STREET 클래스 참가차량은 2.2.2.에 의거 표 18의 기준을 따른다. 단, 4점식 이상의 하네스와 ~~소화기 또는 소화시스템~~,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은 반드시 설치한다. (2019. 10. 변경)

2.3. 각 클래스별 참가선수는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3.1.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멧(풀페이스)(당해년도 하프페이스 병용)(2019. 10. 변경) - 장갑(손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내 마모성 장갑) ※목장갑 제외 - 신발(신축성 있는 가죽제품으로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신발/운동화) 	

표 19 타겟트라이얼 클래스 드라이버 안전장비 목록

2.3.2. 베스트랩 클래스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PRO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멧(FIA 8860-2018, 2010, 2004, FIA 8859-2015, Snell SA2010+ FIA 8858-2002, Snell SA 2015, FIA 8859-2015) - HANS(FIA 8858-2010, 2002) - 드라이버 수트(Overall)(FIA 8856-2000) - 방염내의(FIA 8856-2000) - 바라클라바(FIA 8856-2000) - 장갑(FIA 8856-2000) - 신발(FIA 8856-2000) - 양말(FIA 8856-2000) 	유효기간 없음
SUPER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멧(풀페이스)(2019. 10. 변경) - 드라이버 수트(Overall)(FIA 8856-2000)(당해년도 유예) 	
STREET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FIA 8856-2000)(당해년도 유예, 손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내마모성 장갑으로 대체 가능 ※목장갑 제외) - 신발(FIA 8856-2000)(당해년도 유예, 신축성 있는 가죽제품으로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신발/운동화로 대체 가능) 	

표 20 베스트랩 클래스 드라이버 안전장비 목록

2.3.3. PRO 클래스는 2.3.2.에 의거 드라이버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하며, 기타 클래스 또한 2.3.1. 및 2.3.2.에 의거 헬멧, 장갑 및 신발 등의 드라이버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2019. 09. 변경)

2.4. 차량 검사

2.4.1. 검차는 경기 전 사전 검사 / 경기 후 의무/항의/임의 검차로 진행된다.

2.4.2. 참가차량은 대회기술위원회에 의한 차량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차량은 스티커 부착으로 구분한다. 이 때, 참가차량은 출전이 가능한 상태로 검차를 받아야 하며 참가선수도 2.3 에 의거하여 복장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2.4.3.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경기위원장의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사전 공지된 지정시간에

검차를 받지 않은 참가차량은 연습주행 및 기록계측주행에 참가할 수 없다.

- 2.4.4. 검차 결과에 의거 경기위원장 및 경기기술위원의 판단 하에 참가선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참가차량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 2.4.5. 최종 주행차수를 마친 차량에 대한 경기 후 의무 검차 이후 타 참가선수 및 관계자 등에 의한 항의 검차는 항의 당사자의 항의수수료 납부가 동반되며 전 과정에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위임한 위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
- 2.4.6. 항의 검차에서 지적된 해당항목에 대해 정비작업 완료를 확인하는 서면 또는 관련 자료를 경기 사무국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기위원장의 판단 하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 규정 제3장 제17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전체 경기 실격, 추후 대회 참가 제한 등의 재제가 있을 수 있다.
- 2.4.7. 납부된 항의 검차 수수료는 해당 차량의 규정 위반 발견 시 항의 당사자에게 반납되며, 차량의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시 대회 사무국에 귀속된다.

제 5 장. 참가선수 준수사항

제 1 조. 선수의 책임 및 의무

- 1.1. 참가자는 본 규칙에 따라 공손한 언행과 스포츠맨십에 의거한 예절을 가져야 하며, 대회 관계자 및 다른 참가자 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1.2. 참가선수는 본 경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참가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나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 1.3.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고의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는 1.4에 의한다.
- 1.4.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 당사자는 아래의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 주최자(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배상)
 - (고의사고 시)사고피해 당사자
- 1.5. 참가신청 절차를 통해 엔트리번호를 부여 받은 선수는 반드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대회 사무국으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주최자가 주최하는 다른 대회에 대한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1.6.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및 관련 행사 공식일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불참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

제 2 조. 선수의 복장

- 2.1.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본 규정 제4장 제2조 2.3항에 의거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는 주최자에서 지정하는 패치 및 패치 부착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최자는 재제를 가할 수 있다.
 - 2.2.1. 미풍양속을 해치는 패치
 - 2.2.2. 정치, 종교에 관련된 패치
 - 2.2.3. 기타 주최자가 인정하지 않는 패치
- 2.3. 경기 중, 참가선수는 2.1.에 의거 안전장구 및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경기대기 중에는 참가선수의 품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안전장구 및 복장의 탈의 및 부분탈의가 가능하다.
- 2.4. 베스트랩 부문에 출전하는 클래스의 수상자는 시상식 참여 시 반드시 드라이버 수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조. 메디컬 체크

- 3.1. DOC는 대회 본선 당일 의료팀 및 전담의사와 함께 참가선수에 대한 메디컬 체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2. 메디컬 체크는 대회 본선 당일 사전 공지된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며, 참가선수 전원은 메디컬 체크에 참여하여 경기 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 경기위원장(또는 의료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선수의 메디컬 체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메디컬 체크 결과 선수의 건강 및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경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3.4. 메디컬 체크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선수에 대하여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메디컬 체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경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메디컬 체크를 통해 경기 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5. 참가자는 이벤트 기간 중 음주 및 세계반도핑기구(WADA) 에서 금지 한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DOC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드라이버 브리핑

- 4.1. 대회 본선 당일 아침 드라이버 브리핑을 실시하며, 참가선수 수에 따라 클래스 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4.2. 드라이버 브리핑은 사전 공지된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며, 참가선수 전원은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가하여 주요 전달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4.3.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선수는 벌금 또는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경기위원장의 판단 및 승인에 따라 경기 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4.4. 드라이버 브리핑의 내용은 경기규정을 바탕으로 하나, 대회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드라이버 브리핑에서 경기위원장의 전달사항을 우선시 하여 대회에 적용한다.

제 5 조. 선수 및 차량 변경

- 5.1. 동일한 경주차량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선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경기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된 참가선수는 본 규정 제2장 제 3조 3.2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 5.2. 변경된 선수는 본 규정 제4장 제2조 2.3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5.3. 참가선수는 연습 및 기록계측 주행에 반드시 사전 등록 및 검차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5.4. 연습 및 기록계측 주행 중 경기차량의 고장, 파손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차량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차량 변경 시 본 규정 제4장의 차량기술 및 안전규정과 제3장 제4조 4.11를 준수하도록 한다.
- 5.5.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기차량 변경은 동일 클래스에 한해서만 허가되며, 경기위원장 및 대회심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차량 고장을 우려한 예비차량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6 조. 차량 반출

- 6.1. 각 클래스별 참가차량은 기록계측 주行的 최종 주행차수 종료 후 차량 검차가 완료되기 전 까지 파크퍼미를 나갈 수 없다.
- 6.2. 경기 중 사고, 고장 등의 사유로 경기를 포기한 경우에도 참가차량을 임의로 파크퍼미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출 시에는 경기위원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파크퍼미를 벗어날 수 있다.
- 6.3. 모든 참가차량은 대회 최종 종료 전 까지 경기장 및 피트를 벗어날 수 없으며, 차량의 심각한 파손 또는 참가선수 및 관계자에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위원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트 밖으로 차량을 반출할 수 있다.

제 7 조. 질서의 유지

- 7.1. 참가선수는 본 규정 외에 국가에서 규정하는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2. 참가선수는 대회 공식 리버리킷이 부착된 경기 차량으로 난폭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사항 적발 시 심사위원회 및 경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3. 참가선수는 본 규정 제3장 제13조의 경기방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형사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4. 참가선수는 본 규정 제4장 제2조의 차량규정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5. 참가선수 및 관계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7.6. 경기에 참가하는 차량 및 관계차량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 7.7. 반려동물의 경기장 전체 입장은 금지된다. 단, 안내견 등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은 반려동물은 예외로 한다.
- 7.8. 대회당일 경기장 내 음주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7.9. 대회당일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규정 위반

- 1.1. 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치된다.

제 2 조. 규정의 효력

- 2.1. 본 규정은 참가신청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 3 조. 규정의 해석

- 3.1. 본 규정의 해석 및 관련 문의는 대회사무국 (053-670-7825)으로 문의한다.

제 4 조. 규정의 변경

- 4.1. 본 규정은 DOC의 논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대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4.2. DOC는 본 규정을 공식 홈페이지(www.daegutuningcar.or.kr)에 이를 공지하고, 참가선수에게 배포하여 모든 참가선수 및 관계자가 본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